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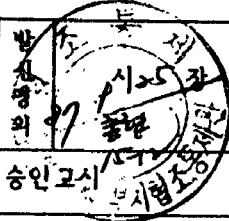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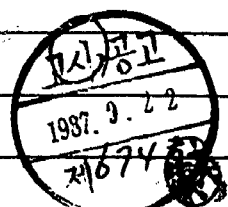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개30321-111	기안용지 (전화: 731-6393)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준영구				
시행일자	87. 7.				
보조 기 관	건설관리국장 전겸	협 조 기 관	영근등지 ^{해상} 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고시안심사) 지적과장 두	문 서 봉 계	
	주택개발국장 주				
	개발2계장 주			발 행 인	
기안책임자	심관중(최종인)				
경 수 신 창 조	각 안 참 조				
제 목	역촌 주택개발재개발구역지적승인고시				
(제 1 안)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 제55호(81.2.20)로 구역지정되고 서고시 511호(87.7.16)로 구역변경결정된 역촌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2항(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권한위임)의 규정에 의거 별첨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고시)및 제9조4항(도면의 종류등)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그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 역촌구역 지적승인고시 원도 1부					
고시안 1부					
					
(제 2 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게재의뢰					
1. 역촌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의뢰하오
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 사본 2부

(제 3 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개발과장

제목 :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적승인고시 보고

1. 건설부고시 제55호(81.2.20)로 구역지정되고 서고시 제511호(87.
7.16)로 구역변경결정된 역촌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8조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고시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안 및 도면 각1부

(제 4 안)

수신 : 은평구청장

참조 :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제목 :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적승인고시 통보

1. 귀구관내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
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하였기 그내용을 통보하니

2.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 고시안 및 도면각 1부

(제 5 안)

4506
6987.9.28

수신 : 수신처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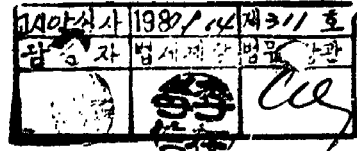
제목 :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고시 통보

1.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별첨과 같이 지적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안 도면 각1부. 끝.

수신처 ;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지적과

4507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적 승인

1. 건설부고시 제55호(81.2.20)로 구역지정되고 서고시 511호(87.7.16)로 구역변경결정된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를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은평구청 주택과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7. 7.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승인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역촌구역	은평구 역촌동 산32-4일대	36,364	37,464	1,100(증)	구역일부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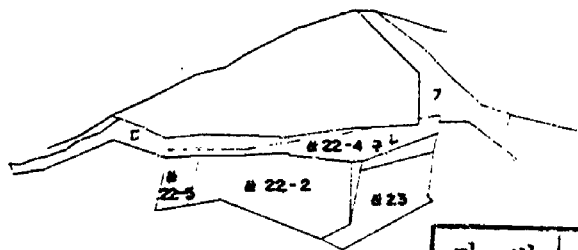
나. 도면 :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 은평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발급번호계 57 호

면적 측량도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2-4번지 3필	축척	3000 분지1
측량	1987년 9월	일측량자	지적기사지적기사1급이강

4



지번	부호	경수면적
22-4	7	1187.0
	L	1047.0
	C	1040.0
계		3274.0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서기 1987년 9월 14일

작성자

지적

지적기사1급 정철현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은평구 출장소



